
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4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안철수 · 김선교  
윤한홍 · 이현승 · 고동진  
박충권 · 최보운 · 유용원  
이달희 · 김장겸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  
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.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  
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 
크게 변화하였고,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  
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 
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.

또한, 현행법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  
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  
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아울러 업무 규율체계 역시 명시된 업무와 ‘부대업무’로만 구분되어  
있어, 고유 · 부수 · 겸영업무로 체계화된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정합성  
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의 목적 및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 기업을 포함하고, 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, 업무 규율체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(안 제2조, 제11조, 제11조의2 등).

##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중소기업”을 “중소기업 및 중견기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“중견기업”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

제11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중 “경우”를 각각 “경우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소기업”을 “중소기업 및 중견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중소기업”을 “중소기업 및 중견기업”으로 한다.

16.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부수업무의 신고)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11조제1항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

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
2.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부수업무(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)를 하려는 경우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1.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
2. 예금자 등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3.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
4.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3(겸영업무의 운영) 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(이하 “겸영업무”라 한다)를 직

접 운영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·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
  3.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
- ② 상호저축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: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·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
2.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: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

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11조의4(겸영업무·부수업무의 회계처리) 상호저축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상호저축은행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제4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

2의3.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상호저축은행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 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중견기업에 대해 신용공여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부대업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던 업무는 제11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수행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<u>중소기업</u>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~ 11. (생 략)</p> <p>제11조(업무)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·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11. (생 략)</p> <p>1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·관리 및 대금의 결제(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중소기업 및 중견기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“중견기업”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</p> <p>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 
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 
한다)

13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서 정  
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  
행·관리·판매 및 대금의 결  
제(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 
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 
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 
해당한다)

14. · 15. (생략)

16.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  
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  
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  
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 
받은 업무

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  
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  
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  
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

-----  
-----경우 또는 상호저  
축은행이 거래자 보호 등을  
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  
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  
는 경우-----

1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경우 또는  
상호저축은행이 거래자 보호  
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 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 
충족하는 경우-----

14. · 15. (현행과 같음)

16.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 업무  
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  
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② -----  
-----  
-----중소기업 및 중견기  
업-----

을,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중소기업 및 중견기업-----  
-----.

제11조의2(부수업무의 신고) ①

상호저축은행이 제11조제1항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

2.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부수업무(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

는 제외한다)를 하려는 경우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1.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
2. 예금자 등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3.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
4.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

<신 설>

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3(겸영업무의 운영) ①

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(이하 “겸영업무”라 한다)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·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업무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
3.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

② 상호저축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

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: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·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

2.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: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

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11조의4(겸영업무·부수업무의 회계처리) 상호저축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상호저축은행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40조(과태료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3. ~ 14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1.·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부  
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  
호저축은행

2의3.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다  
른 업무 등을 겸영한 상호저  
축은행

3. ~ 1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